

# 창업규정

제정 2000. 1.14	개정 2008. 5. 9	개정 2015. 7. 1
개정 2004. 3.18	개정 2011.12. 1	개정 2016. 5. 4
개정 2005. 1. 1	개정 2012. 7. 8	개정 2020. 1. 1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'본 대학'이라 한다) 구성원이 직무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기술력에 바탕을 둔 기술집약형 창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① 교직원의 창업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② 창업 활동을 하는 교직원은 대학에 대하여 재정적 기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교직원의 복수창업은 총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.

④ 학생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 창업활동을 하여야 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'교직원'이라 함은 본 대학에 소속한 모든 전임교직원,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을 말한다. (개정:2011.12.1.)
2. '학생'이라 함은 학부생,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을 말한다. (신설: 2016.5.4)
3. '교직원 창업'이라 함은 교직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(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)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며, 여기서 '설립'이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(사외이사, 비상근 등기이사, 감사 제외)에 취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%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(개정: 2008.5.9.)(개정: 2016.5.4.)
4. '학생 창업'이라 함은 학생이 재학 및 휴학 중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. (신설: 2016.5.4.)
5. '창업 휴학'이라 함은 창업으로 인한 일반휴학을 말한다.
6. '대학 투입분'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투입될 대학의 시설, 인력, 장비, 지적재산권 등을 말한다.
7. '중소기업'이라 함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 (신설: 2016.5.4.)

8. ‘벤처기업’이라 함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벤처 기업을 말한다. (신설: 2016.5.4.)

제4조(창업대상 및 기간)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: 2011.12.1)

1.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직원
2.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
3.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, 창업시 대학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으로 창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 (신설: 2016.5.4.)
4. 우리대학 및 대학원에 학적을 둔 학생

② 창업기간 및 창업휴학 기간은 다음과 같다. (개정: 2011.12.1)

1. 전임교직원: 휴직3년, 겸직1년으로 하며, 총 창업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 처장 또는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, 1회 연장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2.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: 겸직 1년으로 한다. 단, 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겸직을 희망할 시에는 소속부서 처장 또는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다. (개정: 2016.5.4.)
3. 학생: 대학에서 인정하는 창업휴학 기간으로 한다.

## 제 2 장 창 업 절 차

제5조(신청서의 제출) ① 창업희망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청서 및 계획서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창업기술 및 국내외 동향 등 창업의 개요
2. 창업 후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
3. 창업으로 인한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내용
4.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

② (삭제: 2008.5.9)

제6조(검토 및 승인) ① 창업을 승인 받은 교직원(이하 ‘창업 교직원’이라 한다)은 창업 후 1개월 이내에 우리대학이 소유한 기술을 이전하여야 하며, 기술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창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(신설 : 2008.5.9.)

② 교직원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는 부서장 및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부서장은 2항의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,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부서장 및 창업희망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교직원에게 직접 응답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.

제7조(교직원 창업 기업 주식기부) 창업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학에 기부하여야 한다. (신설: 2008.5.9.) (삭제: 2015.7.1.) (신설: 2020.1.1.)

1. 창업 후 1개월 이내에 창업 회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총 수의 5%(단, 자본금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, 기부시점의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일 시에는 5천만원 증자시점까지 5%를 무상기부한다.)

2. 주식시장상장 또는 M&A 시점에 회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총 수의 1.5%

제8조(협약체결) 창업희망 교직원은 승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창업대상 기술

2. 창업 및 운영관련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(시설, 인력, 기술, 자금지원 등)

3. 창출된 부가가치의 일정분에 대한 주식매입 선택권(stock option) 대학부여, 로열티 지분 등 환원계획

4. 기타 소속부서 업무공백의 보완 등 창업관련 필요사항

제9조(창업) 창업교직원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겸직/휴직/보수/위탁연구) ① 창업교직원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겸직의 경우는 1년 이내로, 휴직의 경우는 3년 이내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창업활동으로 겸직하는 교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참여율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속부서 주임교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 (개정 : 2008.5.9.)

③ 창업 교직원은 위탁기관의 승인하에 위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창업 교직원의 의무

제11조(소속부서 업무공백 보완) 창업 교직원은 창업활동에 따른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을 보완하여야 한다.

제12조(학생지도) 창업 활동을 하는 교직원은 학생을 창업회사에 참여시킬 수 없다. (개정: 2011.12.1)

제13조(자료제출 요구) ① 대학은 창업교직원에게 다음사항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창업교직원은 경영상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 (개정: 2008.5.9)

1. 기업경영현황 자료

2. 기술개발에 관한 자료

3. 기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

② 창업교직원이 창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학은 필요하다고 판단시 상기 1항의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, 창업교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 (신설: 2008.5.9)

제14조(비밀유지) 창업교직원은 창업활동으로 인하여 지득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, 이는 그 승계인과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.

제15조(선정 취소) 총장은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전승인 없이 주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
2. 관련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
3. 이 규정의 위반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
4. 기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

## 제 4 장 창업심의위원회

제16조(구성) (삭제: 2004.3.18)

제17조(심의사항) (삭제: 2004.3.18)

## 제 5 장 기타사항

제18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관련규정과 기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
#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00년 1월 14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2.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3.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창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3월 18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5월 9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교직원  
은 규  
정 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7월 8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5월 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